

##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

<P>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 
&nbsp; 손실 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.</P> <P>(대법원  
1993.06.29. 선고 91누2342 판결)</P>